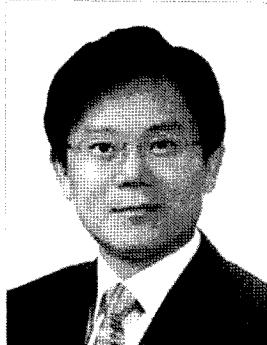


글로벌 특허분쟁, 그 필승 전략

글로벌 특허 전쟁 현황, 국내 지재권법 제도 실태, 지재권법 제도 해외 사례
(영국·일본·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변리사 역할을 알아보자.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 국에서 시발된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은 삼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한국, 일본, 독일 등 9개국으로 확대되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과히 글로벌 기업 간의 생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이전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제 특허분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올 상반기 36건의 국제 특허소송 통계¹⁾를 보면 67%(24건)가 피소 사건이며, 그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피소 사건(22건)이었다. 한편, 국적별 특허소송 현황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이 전체 소송 사건의 절반 정도인 1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의 지식재산 및 관련 법 제도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지식재산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총 수출액의 60%가량을 지식재산산업이 담당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식재산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타 산업에 비해 60%가량 상향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지식재산 로열티 수입은 916억 불에 달하며, 1,800만 명이 지식재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처럼 미국은 이전부터 지식재산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 이면에는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지식재산정책과 이와 관련된 법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다. 지재권 조직 및 자원 우선화에 관한 임법(PRO-IP/2008)에서부터 최근의 특허법 개정까지 미국은 지식재산에 그들의 미래를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허변호사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배경지식과 법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대리인들이 국가와 기업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 미국의 사법제도 역시 국가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정비 중에

있다. 특히 특허 관련 소송(2심)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관할하고 있어, 재판의 전문성 및 신속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제도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변리사의 특허 관련 소송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을 두고 있다. 영국의 변리사는 영국특허변리사협회(CIPA)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소송 대리인 자격을 획득한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특허지방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된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특허전문법원인 특허지역법원을 두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법원과 최고법원에 차례로 항소할 수 있다. 최근 논의 중인 EU 특허의 통합에서도 특허 관련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그리고 신뢰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체 특허법원(CPC) 설치와 3가지 대리인 유형(EU 회원국 변호사와 EPA, 그리고 변리사와의 공동 대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듬해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립하고 국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 특허소송 체계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특허야 말로 기업의 가장 신뢰받는 무기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 MS, IBM 등 대표적인 지식재산 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시장을 개척, 장악하고 후발 주자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의 선두에 각국의 기술 및 지재권 법 전문가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힘을 모아 점

점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특허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주요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에게 실무를 의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도 앞서 언급한 나라들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이미 이전부터 갖추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업무)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비해 7년이나 앞서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허법원은 최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허침해소송은 여전히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별개로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변리사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변리사의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는 현재 특허법원을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FTA 시행 등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 글로벌 특허분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이 분쟁의 핵심인 특허분쟁에서 기술과 법으로 중무장한 미국의 특허변호사, 영국과 일본의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력 소송에 국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기업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그 힘겨운 특허전쟁에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변리사가 실무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2011. 12 |

1) 2011년 상반기 국제 특허 소송 동향(특허청)

2) 미국 지재권 정책 및 특허 개혁(2011. 지재권 국제 동향 설명회 / 권규우 주미특허관)